

## 상주시 공고 제2022 - 90호

「상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19일

상 주



### 「상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한자어를 정비하고, 채주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조문과 인적보증 제도인 연대보증인의 채권 독촉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민원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(안 제11조, 제16조, 제31조, 제40조, 제44조, 제45조, 제49조, 제56조, 제87조, 제88조, 제89조, 제97조)

· 한자어: 계리 → 회계처리, 기장 → 기록

나.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본인서명확인서(전자본인서명확인서)의 민원서류도 가능 하도록 규정 신설(안 제51조 제2항)

다. 연대보증인의 채권 독촉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 개정(안 제118조)

#### 3. 개정조례(안): 붙임참조

#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8일까지 상주시장(참조: 상하수도사업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일반우편: 경상북도 상주시 용마로 164-27(상하수도사업소)

2) 전자우편: jaesim@korea.kr

3) 팩스: 054-536-2566

#### 5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(☎054-537-550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북도 상주시 홈페이지([www.sangju.go.kr](http://www.sangju.go.kr)→행정정보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규칙명: 상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 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
		